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61,163,891	22,834,917
일반회계	664,376,338	19,931,290
특별회계	96,787,553	2,903,627
공기업특별회계	44,833,949	1,345,018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4,833,949	1,345,018
기타특별회계	51,953,604	1,558,60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111,586	393,348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	3, 187, 543	95,626
수질개선특별회계	40,000	1,200
도시개발특별회계	7,382,190	221,46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263,128	127,894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3,282,147	98,46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특별회계	512,000	15,360
주택사업특별회계	113,628	3,409
농공단지특별회계	7,611,096	228,333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1,732,489	51,975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792,139	113,764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75,000	2,25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850,658	205,520

- 제 2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상기와 같다.
- 제 3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 4조 201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1,8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20,322천원으로 한다.
-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